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498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 선고 2002가단2161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49827 판결

판결선고 2007. 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계약은 제1차 신용보증계약과는 보증한도를 달리하고

보증기간도 새로 정하였으며,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도 새로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제1차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보증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체결된것이라 하더라도 제2차 신용보증계약은 제1차 신용보증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제1차 신용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제1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의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4. 6.에야 채무자인 000에 대하여 최초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 해당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책임을 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제1차 신용보증계약과 별개로 성립한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계약은 제2차 신용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한도거래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에 의한 채무 잔액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제2차 신용보증에 의한 근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편입된 대출보증약관 제2조 제4항 제2호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이전에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출의 실행일 전날에 대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1개 이상의 건별 대출이 신용보증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경우에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건별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대출 채무의 잔액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보증부대출의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을 살펴봐도 채무자 000이 원고에게 변제한돈이 제2차 신용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대출금의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충당방법(원고는 대출약관 및 내부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000이 변제한 돈을 여신취급일자 순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약관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